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2년 8월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재정의 중요성

주요 이슈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ESG 동향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SG 공시 강화

주요 통계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재정의 중요성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김현석

‘탄소중립’은 이제 대중에게도 꽤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2015년 말 파리협약에서 본격화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이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잡은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의 추진하에서 이제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각종 정책들이 기존 방향성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품기 위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전환을 국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만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정부 부처는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선도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대적인 전환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즉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지출활동과 그와 연관된 재정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적인 인프라의 교체 및 보급이나 기술개발 등 예산의 직접적인 투입과 조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업과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생각해보자. 우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에 기반한 발전시설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비용절감을 모색해야 한다. 그와 맞물려 전력도소매시장에서 탄소배출의 부담을 발전사업자 및 최종소비자가 적절히 내재화할 수 있도록 가격 신호의 강화 및 직간접 세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도 국가재정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재정투입에 비해 간접적인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는 다른 것이 동일할 때 최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간접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진할 때는 별도의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기존 경제구조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세제 및 보조금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대한 고려가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세하는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는 석유류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 추진에 유해적이다. 더욱이 향후 기존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되는 세제의 교정적 기능이 강화될수록 그러한 교정적 기능을 무효화하는 지원제도는 그 유해성이 더 커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석유류 사용이 현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해당 지원제도의 기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존 정책목표인 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차원의 유해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

탄소배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재정제도의 대원칙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일 것이다. 그와 함께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간결한 형태의 에너지 세제 및 각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 재정비 작업이 필요로 한다. 이때 필히 유념해야 할 것은 개별 제도 단위에서의 고민은 대대적인 전환 차원에서 유의미한 해답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연관된 제도들을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과감한 조정을 목표로 단계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 접근이야말로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대변이 아닌 국가 전반적인 전환을 위한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김경훈 연구위원

2022.8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을 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된다. 이는 여성의 이사회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는 글로벌 추세로 국내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성이사 비율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 산업 경험 등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①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배경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165조의 20)이 2022.8.5일 부터 시행된다.(2020년 도입, 2022년부터 시행) 새 조항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이 낮아 여성의 이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의 여성이사 비중은 8.7%로 미국(29.7%), 독일(34.1%), 프랑스(45.3%)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인 중국(13.8%)과 일본(12.6%)에 비해서도 낮으며¹⁾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헝가리, 칠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후발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²⁾

② 해외 주요국 현황

해외에서도 주요국이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이사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도 가하는 등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여성이사 할당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노르웨이가 2003년 여성이사 할당제를 의무화했다. 이 영향으로 노르웨이의 여성이사 비율이 2003년 11%에서 2008년 41%까지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에서 성별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인종, 연령, 전문적 특성 등으로 다양성 범위가 확장하고 있는데, 2021.8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나스닥 상장사는 여성이사 1명과 소수 인종 혹은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사를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승인했다.

주요국 여성이사 할당제 규정

국가	도입연도	할당율(%)	제재 및 인센티브
노르웨이	2003	40	경고, 벌금, 상장폐지, 해산 등
스페인	2007	40	미준시 사유 공시, 준수기업은 정부와 계약시 우선권 부여
프랑스	2011	40	여성을 제외한 임원 임면의 효력을 미인정, 규정 충족시까지 이사의 보수 지급 중단
이탈리아	2011	33	벌금, 선임 무효화 등
한국	2020	최소 1명	-

※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연구소

1) MSCI(2021), Women on Boards : Progress Report 2021
 2) EgonZehnder(2020), 2020 Global Board Diversity Tracker

③ 기대효과

여성이사의 증가는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ESG 관련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을 갖춘 이사회는 경영자 관리 및 감독에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가진 기업이 재무성과와 ESG 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Fortune 500 기업 중 여성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자기 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수익률(ROS), 투자자본수익률(ROIC)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³⁾ S&P500 지수 편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들이 ESG 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⁴⁾

특히, 최근 증가하는 사회적책임투자가 중요시 되면서 여성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은 ESG 관점에서 투자 유치가 수월해질 가능성도 높다.

④ 국내기업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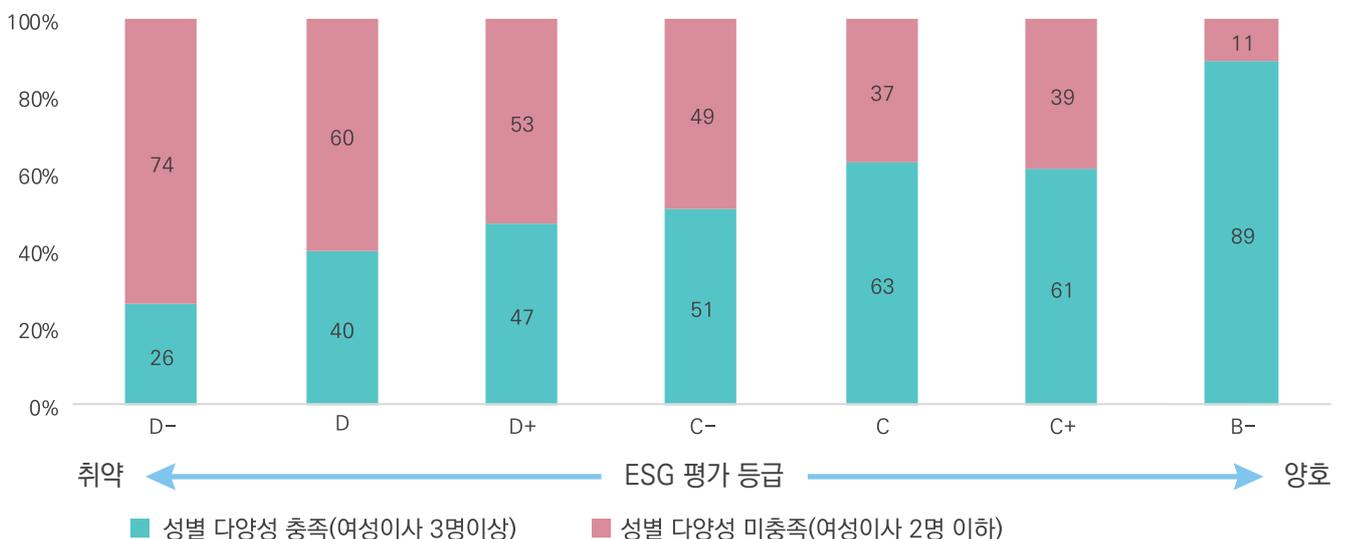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는 글로벌 추세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연관되어 있다.

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과 기관투자자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공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Glass Lewis는 기업이 이사회 성별규제를 미준수하면 이사회후추천위원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BlackRock은 여성이사가 없을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고 공시하며 2021년 988개 회사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였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과 기관투자자는 아직 이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 기업은 여성이사 비율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산업 경험 등으로 다양성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SG 평가등급별 성별 다양성 충족 기업 비중



※ 자료: ISS-oekom, Iss Analysis

3) Catalyst(2011), The bottomline: Corporate performance and women's representation on boards(2004-2008)

4) ISS Corporate solution(2018), Across the Board Improvements: Gender Diversity and ESG Performance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SG 공시 강화



신새미 연구원

해외에서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해 ESG 관련 공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산업 및 금융계의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워싱을 행하는 기업, 금융사,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경제적 이득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서 이를 예방해야 한다.

EU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린워싱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비재무 정보 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개정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NFRD는 500인 이상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인데, 2024년부터 시행될 CSRD에는 적용 대상 확대, 공시에 대한 감사, 보고 표준 도입,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도입했다. 투자나 상품의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영향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며 투자대상 기업, 국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18개 의무공시 사항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 10일에 1단계가 시행되었고 참조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인 기술적 세부규칙(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이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자산 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상장 기업이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2030년에는 의무 대상이 전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 경제와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2022년 9월에 공개하고 2023년에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시행 후에는 국제 논의 방향, 기술 진보,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이나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사후관리 역시 필요하다.

EU의 ESG 공시 관련 지침·규정 현황

구분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시기	'14년 제정, '18년 시행	'21년 4월 제안, '24년 시행 예정	'19년 11월 발표, '21년 3월 시행
대상	500인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등 11,700개사	49,000개로 확대(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를 제외한 모든 기업 대상)	금융기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사회적 책임, 인권, 반부패, 이사회 의 다양성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 공시 내용의 검증과 미준수에 따른 제재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재무적 정보만 담은 NFRD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제안됨 적용 대상 확대, 보고 정보, 정보의 감사 및 검증, 보고 표준 도입, 정보의 디지털화 등의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국가, 부동산 자산 투자에 대한 18개 의무공시 항목 포함 2021년 3월 10일부터 SFDR 1단계 공시가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 기술적 세부규칙(RTS)이 적용될 예정

※ 자료 :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rnst & Young

ESG 통계 지표

2022년 8월 24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1.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144	145	151	162	172	183	186	188	199
사회적채권	765	788	794	820	835	871	912	946	966
지속가능채권	199	216	230	233	237	246	279	304	305

(2) 국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1.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148	148	156	168	173	183	185	186	191
사회적채권	1,247	1,273	1,273	1,306	1,331	1,362	1,400	1,428	1,460
지속가능채권	165	180	175	181	182	186	199	213	217

2. ESG 평가

(1) 2022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ESG 등급표(분포)

기관	운용규모
국민연금	130조 4,000억 원
사학연금	4,561억 원
공무원연금	3,215억 원
합계	약 131조 원

3. 기타 통계

CDP* 환경 공시 참여 기업 수

공시 영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후변화	5,532	5,815	6,251	6,937	8,361	9,526	13,126
수자원	1,237	1,426	1,997	2,113	2,435	2,934	3,368
삼림자원	179	199	264	455	543	687	864
총 기업 수	5,624	5,863	6,316	7,016	8,446	9,617	13,189

*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022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금융	7월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용 동향
2월	비재무정보 공개 법제화 및 TCFD 기준 채택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철강	8월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3월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법제화 동향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식품산업	9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동향
4월	ESG위험 방지를 위한 Taxonomy 법제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 : 전기·전자·반도체	10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향
5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내외 정책 동향	11월	한국기업의 ESG 평가 결과와 과제
6월	新 기업가정신 특집	12월	COP27 개최 결과 및 평가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김경훈 연구위원
T. (02)6050-3144 | E. khkim1206@korcham.net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SG 공시 강화

신새미 연구원
T. (02)6050-3143 | E. sshin@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신새미 연구원
T. (02)6050-3143 | E. sshin@korcham.net